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6. 9 선고 2021가단10592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

피고(선정당사자) B

변 론 종 결 2022. 5. 12.

판 결 선 고 2022. 6. 9.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8. 4. 25.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는 15,636,332원의 한도 내에서, 선정자 D에 대하여는 7,818,166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15,636,3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선정자 D는 피고(선정당사자)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7,818,1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선정당사자)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8. 4. 25.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23,886,24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는 23,886,2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D는 피고(선정당사자)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1,943,1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와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9263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2. 27. 위 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E와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39,667,751원 및 그 중 85,029,256원에 대하여 2012. 12. 6.부터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2013. 1. 24.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망 F의 소유였는데, 망 F은 2018. 4. 2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G와 자녀들인 C, 피고(선정당사자), H이 있다.

다. C와 피고(선정당사자), G, H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선정당사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한다), 피고(선정당사자)는 2019. 9.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선정당사자)는 2020. 11. 1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자신의 배우자인 선정자 D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20. 11. 19. 위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D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망 F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1. 5. 19. 채권최고액 33,000,000원, 채무자 망 F,

근저당권자 I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 ② 2013. 4. 17. 채권최고액 6,500,000원, 채무자 망 F, 근저당권자 I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 ③ 2014. 7. 10. 채권최고액 24,000,000원, 채무자 망 F, 근저당권자 I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각 설정하였는데, 피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리금 중 2018. 6. 11. 4,623,989원, 2018. 6. 20. 2,882,584원, 2019. 7. 14. 18,807,452원, 2019. 7. 24. 10,810,601원, 2020. 4. 9. 10,210,879원 합계 47,335,505원을 전액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2020. 4. 13.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바. 한편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C에게는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시가 22,984,000원(= 시가 103,428,000원 × 상속지분 2/9)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 139,667,751원 및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포항시 남구청, 법원행정처, K, I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선정자 D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C와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익자인 피고(선정당사자)와 전득자인 선정자 D를 상대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선정자 D는,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 사이의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선정자 D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C와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있을 뿐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 사이의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지 않음은 청구취지 기재 자체로 명백하므로, 선정자 D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C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 및 전득자인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관련 법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 및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2) 원상회복의 방법

살피건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이루어진 2018. 4. 25.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후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가액배상의 범위

살피건대, 이 법원의 J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 12. 10.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117,699,000원이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의 시가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고, 피고(선정당사자)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리금 합계 47,335,505원을 상환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2/9에 해당하는 공동담보가액은 15,636,332원[$(117,699,000\text{원} - 47,335,505\text{원}) \times 2/9$, 원 미만 버림]이고,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은 지연손해금을 제외하더라도 139,667,751원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수익자인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는 위 각 금액 중 작은 금액인 15,636,33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전득자인 선정자 D에 대하여는 위 공동담보가액 중 선정자 D가 증여받은 1/2 지분의 시가 상당액인 7,818,166원($= 15,636,332\text{원} \times 1/2$)이 선정자 D가 취득한 이익이므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 중 작은 금액인 7,818,16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C와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익자인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는 15,636,332원의 한도 내에서, 전득자인 선정자 D에 대하여는 7,818,166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하고, 수익자와 전득자가 공동피고로 되어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들의 가액배상의무는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피고(선정당사자)는 15,636,332원, 선정자 D는 피고(선정당사자)와 공동하여 위 15,636,332원 중 7,818,1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하경

별지